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3. 9 선고 2017가합568281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3. 9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,857,930원 및 그 중 301,656,309원에 대하여 2017. 9. 21.부터 2017. 12. 2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2017. 4. 2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. 4. 21. 접수 제305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7. 4. 2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17. 4. 21. 접수 제1388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재판장판사진상범

판사이재경

판사서청운

별지